

2020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Education for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 법인 등의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작되었으며 2020년도 교육운영 시에 활용합니다.



I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요 / 1	
	1. 2019년-2020년 제도 주요 사항 비교 -----	3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소개 -----	4
II	교육 실시 기관의 기본 운영 방향 / 9	
	1. 내실 있는 교육 운영 -----	11
	2. 소속산하 기관 실적 관리 철저 -----	11
	3. 기관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 방식 활용 -----	12
	4. 보건복지부 양성 강사 및 추천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	12
	5.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등 부실운영 주의 -----	13
III	교육실시 방법(국가기관) / 15	
	1. 교육계획 수립 -----	17
	2. 교육 시행하기 -----	19
IV	교육실시 방법(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공단) / 31	
	1. 교육계획 수립 -----	33
	2. 교육 시행하기 -----	35
V	교육실시 방법(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 급 학교) / 47	
	1. 교육계획 수립 -----	49
	2. 교육 시행하기 -----	51
VI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 61	
VII	참고자료/ 73	
	1. 교육 유의사항 -----	75
	2. 교육 운영기관 현황(온-오프라인 리스트) -----	76
	3. 추천 콘텐츠 제도 안내 -----	79
	4. 자주 묻는 질문(2020년 기준) -----	81
	5. 각종 서식 -----	86

I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요



1 2019년-2020년 제도 주요 사항 비교

구분	2019년	2020년
교육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직원·학생 대상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 없음
교육 결과 제출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 및 각 급 학교 등의 경우에는 각 급 기관별로 제출 - 단,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취합하여 제출 (예외: 개별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 없음
실적보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년도 2월 말일(2020년 2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년도 2월 말일(2021년 2월 28일) - 단, 사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사군구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대상이므로 2020년 10월 31일까지 실적 입력
교육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의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의 제한 없음 - 단, 2019년-2020년 보건복지부의 전문 강사 양성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한 강사 리스트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기관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 없음
교육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교육자료 게시 교육 시 활용 할 수 있는 추천 콘텐츠 발굴 게시 (강의안, 영상, 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 없음
원격교육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애인개발원 원격교육 사이트 오픈(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2019.12) - www.able-edu.or.kr/e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애인개발원 원격교육 사이트 운영(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http://e-learning.nhi.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https://goods.kohi.or.kr/index.do - https://edu.kohi.or.kr/index.do
교육방법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준수
법률 개정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1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21.6.4. 시행) *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점검 결과 교육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위탁제도 도입, 전문강사제 도입, 점검 결과의 각종 평가 반영 등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소개

1 교육 목표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2 연 혁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규정
- (2016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16.6.30. 시행)
 - 교육 의무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
 -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 후 결과 제출 명시
- (2017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오픈
- (2019년)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오픈
 -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가능
- (2019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19.12.3. 개정, 2021.6.4. 시행)
 -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점검 결과 교육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위탁제도 도입, 전문강사제 도입, 점검 결과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주요 개정내용>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주요 개정내용>

-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 (중간 생략)
 -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법적 내용

-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규칙 제2조의2 (장애 인식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실시 주체 · 교육 대상자 · 교육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포함 내용 ·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제출 기한 명시 · 교육 결과 보고 서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교육 실시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 	
도 입	시기	· 2007년
	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확 대	시기	· 2016년
	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 급 학교
의무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 급 학교
	· 소속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직원 · 교사 · 학생(보육아동, 원생, 초·중·고·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교육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교육 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월 28일까지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교육실적 입력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함
 - *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군·구, 읍·면·동(시·군·구에서 읍·면·동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일괄 실시한 경우에도 교육실적은 읍·면·동 단위로 개별 제출)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지방자치분권실>지방자치제도 공시자료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자료 기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공기업제도·운영 공시자료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6개 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자료 기준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4 교육운영체계

● 사업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역할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제도 및 운영방향 수립 ·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사업전담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 관련 정책 지원 · 교육 관련 문의 대응
교육실시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 소속기관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실적 제출

● 교육 수행 체계

단 계	내 용	비 고
①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배포 	보건복지부
↓		
② 교육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 · 추천 교육콘텐츠 게시* 및 홍보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한국장애인 개발원
↓		
③ 교육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직원, 학생 대상 -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방식을 활용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주체
↓		
④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시 - 가급적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전 직원, 학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 	교육실시주체
↓		
⑤ 교육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실적 제출 - 2020년 교육실적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입력(제출) 	교육실시주체
↓		
⑥ 교육실적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교육 실적 취합 - 이수기관별 세부 통계 도출 및 미이수기관 리스트 관리 	한국장애인 개발원
↓		
⑦ 교육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결과 및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보건복지부

II

교육 실시 기관의 기본 운영 방향



1 교육 실시 기관의 기본 운영 방향

1 내실 있는 교육 운영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후에는 실적 입력 등 관리 철저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라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2. 환경이나 교육 대상자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 방법을 활용 하는가
 - 사회적 환경, 기관 내 여건·환경이나 교육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 모색
 -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교육 대상(직원, 교사, 학생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3. 교육 수강 인원 및 시간은 적당한가
 -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의 경우, 적절한 교육 시간 및 환경 조성
 - 집합 교육(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 효과를 위해 소규모 교육 권장
 - *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4. 모든 직원이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 기관장 및 고위직 등 교육 참여
5. 교육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교육생 만족도 조사 수행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개선 권장

- 충실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해 2021년 6월 이후부터 매년 실적점검 예정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2021.6.4. 시행)에 근거함

2 소속산하 기관 실적 관리 철저

- 상급기관(각 부처, 시군구)은 관할 기관의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
 - 단,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조직(지부, 지사, 등)의 수와 규모가 많거나 분류체계가 불분명하여 중앙단위에서 결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개별 가입하여 실적 입력할 수 있음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실적 현황 요청 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 * 산하 단위의 교육 실적 현황은 상급(중앙)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단, 하급기관 중 가입된 기관만 확인 가능)

3 기관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 방식 활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다양하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 방법 활용
 - 사회적 환경, 기관 내 여건·환경이나 교육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 모색*
 -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달 효과가 좋다면,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등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육 시행 가능
 - * 불가피하게 대면교육(집합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확인 가능)' 준수

4 보건복지부 양성 강사 및 추천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 보건복지부의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과정을 이수한 강사 활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 강사 Pool 게시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강사찾기
- 사용자 편의 및 교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추천 콘텐츠 적극 활용
 - **(표준교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구현한 기본 텍스트 교재* 제공
 - * 강사가 현장에서 활용하는 '강의안' 제작의 바탕이 되는 기본서
 - **(우수 강의안)** 내·외부 강사가 강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강의안* 게시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취학 전 유아용 6종
 - * 공무원 등 성인용 6종
 - **(사이버 동영상)**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성인용 교육 동영상* 및 유아용 애니메이션** 게시
 - * 성인용 '인식의 새로고침' 교육 동영상
 - ** 유아용 '상상음악대' 애니메이션(활동자료, 가이드 포함)
 - **(추천 교육 콘텐츠)** 공공 및 민간에서 제작·활용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심사단의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 게시



5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등 부실운영 주의

- 일부 민간교육업체의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교육 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할 우려 높음
 - 법 상 의무화된 교육이므로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 요청

<교육 취지 훼손 사례>

- 검증되지 않은 강사의 저 품질 교육 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주입
- 내부 직원의 무성의한 자체 교육을 1회 실적으로 기입하여 제출
- 무료 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의료기기, 상조회사 상품 등과 기타 제품 판매 홍보 연계 교육
- ‘특정 업체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 실적 인정 된다’는 잘못된 정보 제공 및 강압적 교육 이수 권장 등

- 특히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이름이 유사한 것을 악용하여 일부 민간교육업체에서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강요 등 어린이집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

☞ **악용 예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일 이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 위 내용은 잘못된 정보로 2020년 교육실적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실적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음. 무엇보다 교육 실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에 연락을 하는 일은 없음을 유의)

III

교육실시 방법 (국가기관)



1 교육계획 수립

1 교육대상

가.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의 설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취지상 국가기관 전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교육보고율’ 지표 관리를 위해 **교육 후 실적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의 기준**을 정함

나.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 기준

- (대상 기관 분류 기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부처별 소속기관(1~4차) 현황에 따라 소속기관 차수를 기준으로 교육 보고 대상 기관을 정함

구분	N차
부·처·청	상위기관, 0차
부·처·청 산하의 소속기관	1차~4차 기관 분류

- 부처·청 단위로부터 2차 소속기관까지는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
-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 4차 단위 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3차 기관까지 교육 후 결과보고를 의무 대상으로 함
- 함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관 단위로 개별 결과보고 해야 함
- * (예)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경찰서를 집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경찰청 및 각 경찰서는 개별로 실적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보고하여야 함

<기본 예시>

기관명	구분	교육대상	결과보고
경찰청(상위기관, 0차)	0차	해당	해당
경찰청 ○○도지방경찰청	1차	해당	해당
경찰청 ○○도지방경찰청 ○○경찰서	2차	해당	해당
경찰청 ○○도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파출소	3차	해당	자율
경찰청 ○○도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지구대	3차	해당	자율

<우체국 소속 기관 : 소속기관이 4차까지 있는 경우 예시>

기관명	구분	교육대상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차	해당	해당
우정사업본부	1차	해당	해당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2차	해당	해당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3차	해당	해당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우체국	4차	해당	자율

☞ 소속기관의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현황은 상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 교육 의무 대상 기준: 기관 소속 직원

● (소속 직원) 기관장 및 모든 직원

※ 참고사항

교육 취지에 따라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 단, 2021년 실적부터는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 참석 여부’, ‘직원 교육 참석율’ 등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1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2021.6.4. 시행, 개정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육 시행하기

1 교육 개요에 대한 이해

-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권장
- (교육 인원) 교육 취지에 따라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다만, '집합 교육(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1회 교육인원은 적정인원으로 나누어 실시 권고
-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 운영 가능.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교육 결과)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장애인복지법」 제25조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 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목표 수립하기

- (교육 목표) 성공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전년도 교육 결과 및 교육 수강생 의견 등을 반영하면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결정할 수 있음
 - * 교육 운영 계획서는 Ⅷ(참고자료)-5-1(교육 운영계획서) 참고

3 교육 방법 결정하기

가. 교육 방법 결정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단순 문서(리플렛, 교육자료 등)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의 방법>

대분류	소분류
① 집합 교육 (대면)	①-1.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①-2. 외부강사 교육
	①-3. 내부직원 전달교육
② 원격 교육 (비대면)	②-1.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②-2. 사이버 교육
	②-3. 시청각 교육

① 집합 교육

-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음
- 내부직원 활용,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 강사 자격의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 인식개선 분야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추천**
 - * 외부강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한 강사 및 주요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 확인을 통해 강사 섭외 권장
- 교육방법은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추어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문화체험, 장애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수 있음
 - * 장애체험 교육의 경우 '장애인은 힘들고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부강사를 이용한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를 요청하여 교육내용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포함 여부 및 교육 대상에 적합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확인 필요(권장)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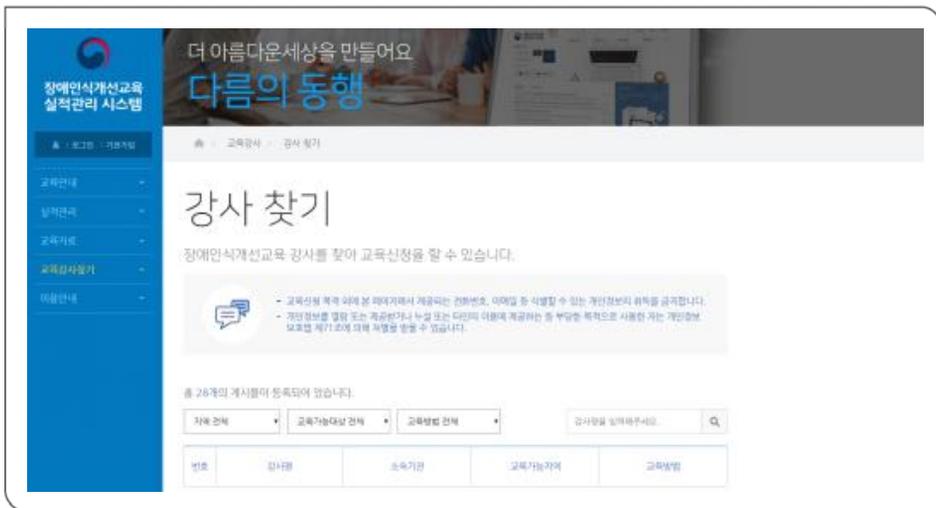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①-1.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한 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강사 정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강사 찾기
- ‘지역’, ‘교육대상’, ‘교육방법’ 등에 따라 강사 검색 가능
- 강사 목록에서 ‘강사 명’ 클릭 시 강사정보 및 사진, 참고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섭외 희망 시 공개된 E-mail 또는 연락처로 직접 섭외 가능

● **교육신청 목적 외에**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 E-mail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을 금지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거조에 의해 **처벌 가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강사 찾기’ 메뉴>

①-2. 외부강사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한 강사 이외 모든 외부 초청강사에 의한 교육을 말함
-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은 없으나 정보 공유 차원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배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리스트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는 VII-2(교육 운영 기관 현황)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

☞ (주의) 일부 교육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해 무료교육 제공 등 교육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가급적 이 안내서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①-3. 내부직원 전달교육

- 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한 교육* 가능. 장애 감수성을 가진 직원에 의해 실시(권고)
 - * 단, 단순 문서(리플렛, 교육자료 등)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내용)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 가능
- (교육자료) 상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어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시 활용 가능
- '대상별(성인 등)', '자료유형별(영상, 도서, 이미지, 교안&교재 등)'로 나누어 추천 콘텐츠** 검색 가능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추천콘텐츠

** 추천 콘텐츠 관련 내용은 VII-3(추천콘텐츠 제도 안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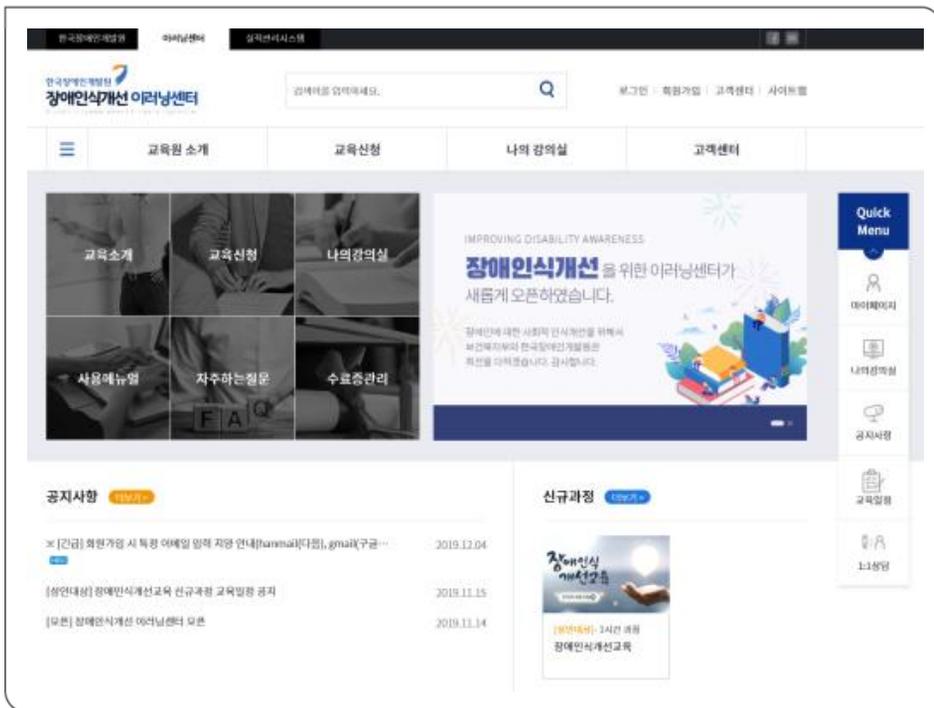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추천 콘텐츠' 현황>

② 원격 교육

- 비대면으로 인터넷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의 이러닝센터 교육, 시청각 교육 등이 있음
- 대면 교육이 어렵거나 집합 교육을 한 후 신규직원 등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할 때 원격 교육 실시 가능.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②-1.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교육(1시간) 수강 및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활용
 -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www.able-edu.or.kr/elearning
 - * 회원가입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 사용 권장
- 교육 수강 희망자는 교육 기간을 참고하여, 기수별로 수강신청 가능
 - * 총 19개 차시, 1시간으로 구성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수강신청 가능 (학습진도 90% 이상, 평가시험 70점 이상 수료)





교육신청					
교육과정안내			교육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성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유아					
대상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상태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0기-	1시간	2020.05.25. ~ 2020.05.31.	2200명/2500명	수강신청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1기-	1시간	2020.06.01. ~ 2020.06.07.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2기-	1시간	2020.06.08. ~ 2020.06.14.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3기-	1시간	2020.06.15. ~ 2020.06.21.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4기-	1시간	2020.06.22. ~ 2020.06.28.	0명/200명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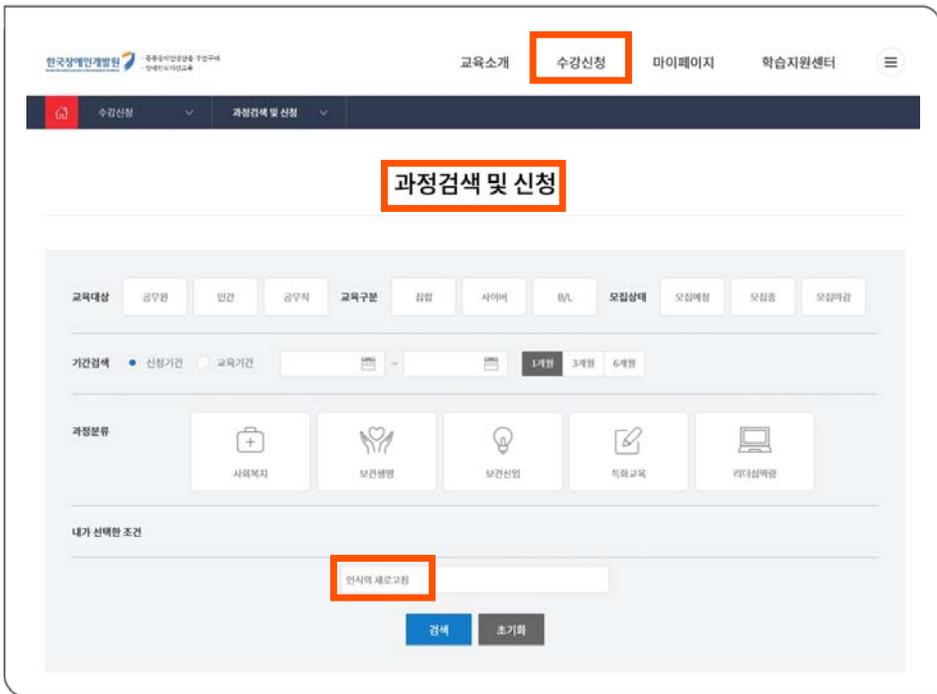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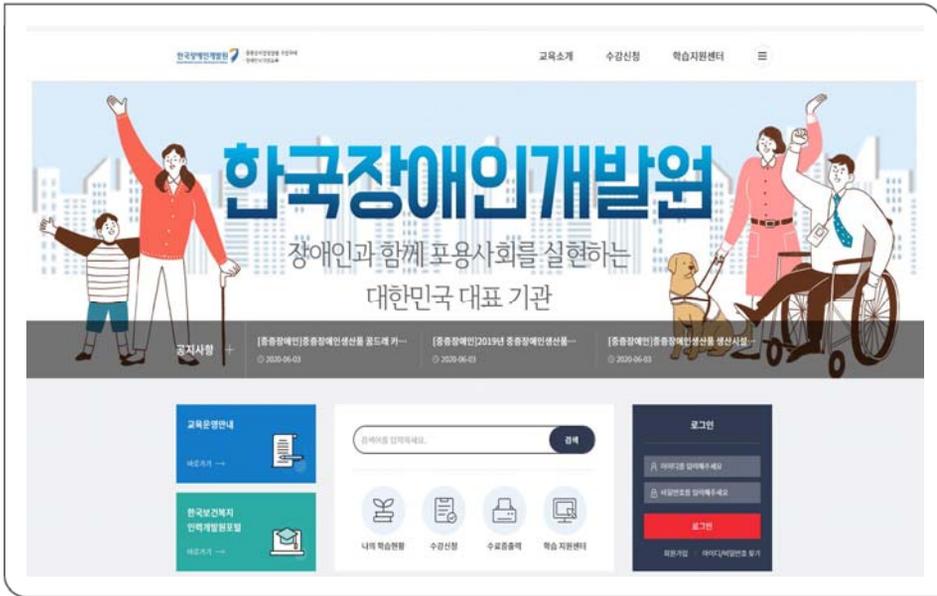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②-2. 사이버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부 사이버 교육센터 이용 가능
- *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는 VII-2(교육 운영 기관 현황) 참고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교육자료에서 확인 가능

교육기관명	교육 방법 및 내용	홈페이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공무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새로고침 -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로그인 >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HI 교육포털 공동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새로고침 	goods.kohi.or.kr/index.do > 로그인 >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인식의 새로고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식의 새로고침’>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을 수강할 경우, 필히 로그인 → 상단 메뉴 ‘수강신청’ 클릭 → 과정검색 및 신청 화면 내 ‘인식의 새로고침’ 으로 검색하여야 함

②-3. 시청각 교육

- 교육 동영상 시청 등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 시청 동영상 등에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 가능
- (교육자료) 상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어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
- ‘대상별(성인 등)’, ‘자료유형별(영상, 도서 등)’로 추천 콘텐츠** 검색 가능
 -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추천 콘텐츠
 - ** 추천 콘텐츠 관련 내용은 VII-3(추천콘텐츠 제도 안내) 참고

4 교육 결과 제출

- (제출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기관 회원 가입 후 실적 입력
 - * 시스템 이용방법은 VI(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후 가입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은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
- 실시 날짜, 교육 시간, 교육 대상 및 참가 인원,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사 성명 및 소속, 강의 또는 영상 제공기관명 등을 정확하게 입력*
 - * 교육 결과보고서는 VIII(참고자료)-5-2(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참고
- (제출 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상시제출 가능

☞ (주의) 교육 결과 제출을 민간교육기관 또는 외부강사가 대행할 수 없음. 법 상 교육의 주체는 기관의 장이므로 각 기관에서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함

5 교육 평가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감수성 및 장애이해 제고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권장)
 - * 교육 설문지는 VIII(참고자료)-5-3(교육 만족도 조사지), 4(교육 효과 조사지) 참고
-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는 한편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환류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이력상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안내 | 실적관리| 교육자료 | 교육감사찾기 | 이용안내

기관로그인

기관명을 조회해주세요. 조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

기관가입 | 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2019년 교육실적 입력미감 (미입력 기관 불이익 없습니다)
 [필독]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실적보고 관련 전화를 받은 경우)
 교육 후 30일 이내 실적 입력하지 않아도 실적인경 가능합니다
 로그인, 기관가입, 결부수경 등 시스템 오류 해결방법
 무료교육 빙자로 상품 홍보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 안내

2020-03-13 실적입력
 2020-01-07실적조회
 2019-06-11교육감사찾기
 2020-01-20추천콘텐츠
 2020-01-29

이전 실적 조회 | Q&A | FAQ | 장애인식개선 이력상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이력상센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다름의 동행

실적관리 > 실적 입력

2020년 실적추가

당해 연도 실적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2020년도 실적추가 마감일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기관유형			
기관명			
주소			
담당자 성명	기관 번호		
	기관 이메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 실적제출화면>

IV

**교육실시 방법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I 교육계획 수립

1 교육대상

가.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의 설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취지상 국가기관 전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교육보고율’ 지표 관리를 위해 **교육 후 실적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의 기준**을 정함

나.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 기준

나-1. ‘지자체’ 기준

- (대상 기관 분류 기준) 행정안전부 공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한 광역, 기초, 읍·면·동
- 출장소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교육은 자율이며 의무 대상 기관 아님
- 읍·면·동까지 교육 보고 단위이며 광역 단위에서 함께 교육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기관 단위로 개별 결과보고 해야 함**

<기본 예시>

기관명	교육 실적 보고 대상여부
시도	해당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해당
읍면동	해당
출장소	자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율

- ☞ 상위 지자체(광역시 등)에서 산하 지자체의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현황은 상위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적조회

연도 선택 후 실적조회 가능

기관선택

▼
년도 선택 ▼
바로가기

나-2. '공공기관' 기준

- (대상 기관 분류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자료 기준에 따름
 - 각 공공기관 본부 교육담당자는 교육 실적을 총괄적으로 입력을 기본으로 하되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총괄 입력이 어려운 경우 산하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지사 등) 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기관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
- ☞ 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지사 등) 가입 시 상위기관에 공공기관명을 입력 하면 공공기관 본부에서 지역조직의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현황 확인 가능

나-3. '지방공사 및공단' 기준

- (대상 기관 분류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기준에 따름
 -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기금)은 제외

다. 교육 의무 대상 기준: 기관 소속 직원

- (소속 직원) 기관장 및 모든 직원

※ 참고사항

교육 취지에 따라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단, 2021년 실적부터는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 참석 여부', '직원 교육 참석율' 등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1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2021.6.4. 시행, 개정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교육 시행하기

1 교육 개요에 대한 이해

-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권장
- (교육 인원) 교육 취지에 따라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 다만, '집합 교육(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1회 교육인원은 적정인원으로 나누어 실시 권고
-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 운영 가능.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교육 결과)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함
 - * 단,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시·군·구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대상'이므로, 2020년 10월 31일까지 실적 입력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장애인복지법」 제25조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 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목표 수립하기

- (교육 목표) 성공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전년도 교육 결과 및 교육 수강생 의견 등을 반영하면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결정할 수 있음
 - * 교육 운영 계획서는 VII(참고자료)-5-1(교육 운영계획서) 참고

3 교육 방법 결정하기

- 가. 교육 방법 결정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단순 문서(리플렛, 교육자료 등)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의 방법>

대분류	소분류
① 집합 교육 (대면)	①-1.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①-2. 외부강사 교육
	①-3. 내부직원 전달교육
② 원격 교육 (비대면)	②-1.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②-2. 사이버 교육
	②-3. 시청각 교육

① 집합 교육

-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음
- 내부직원 활용,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 강사 자격의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 인식개선 분야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추천**
 - * 외부강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한 강사 및 주요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 확인을 통해 강사 섭외 권장
- 교육방법은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추어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문화체험, 장애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수 있음
 - * 장애체험 교육의 경우 '장애인은 힘들고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부강사를 이용한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를 요청하여 교육내용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포함 여부 및 교육 대상에 적합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확인 필요(권장)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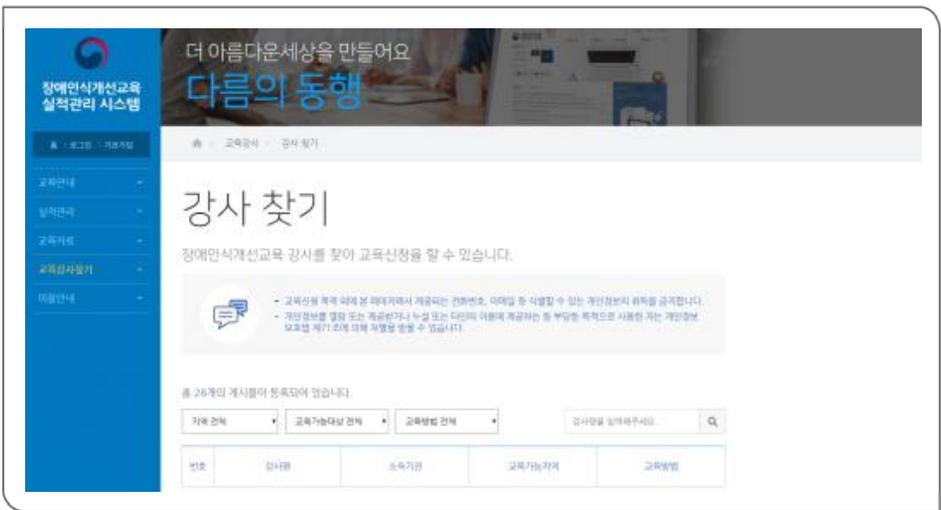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①-1.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한 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강사 정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강사 찾기
- ‘지역’, ‘교육대상’, ‘교육방법’ 등에 따라 강사 검색 가능
- 강사 목록에서 ‘강사 명’ 클릭 시 강사정보 및 사진, 참고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섭외 희망 시 공개된 E-mail 또는 연락처로 직접 섭외 가능

● **교육신청 목적 외에**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 E-mail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을 금지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의해 **처벌 가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강사 찾기’ 메뉴>

①-2. 외부강사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한 강사 이외 모든 외부 초청강사에 의한 교육을 말함
-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은 없으나 정보 공유 차원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배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리스트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는 VII-2(교육 운영 기관 현황)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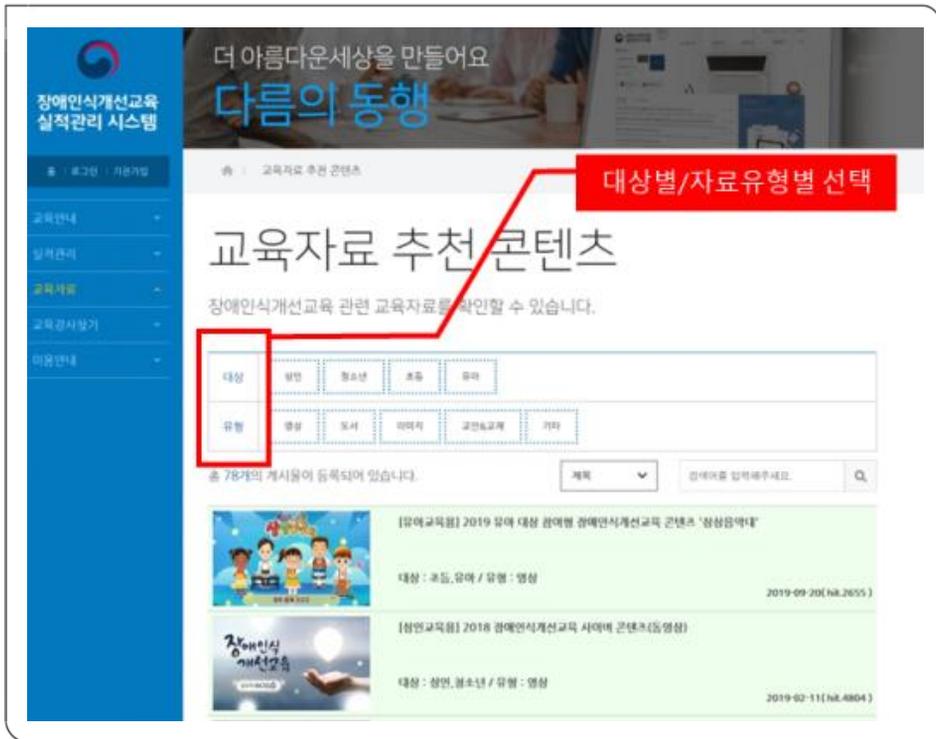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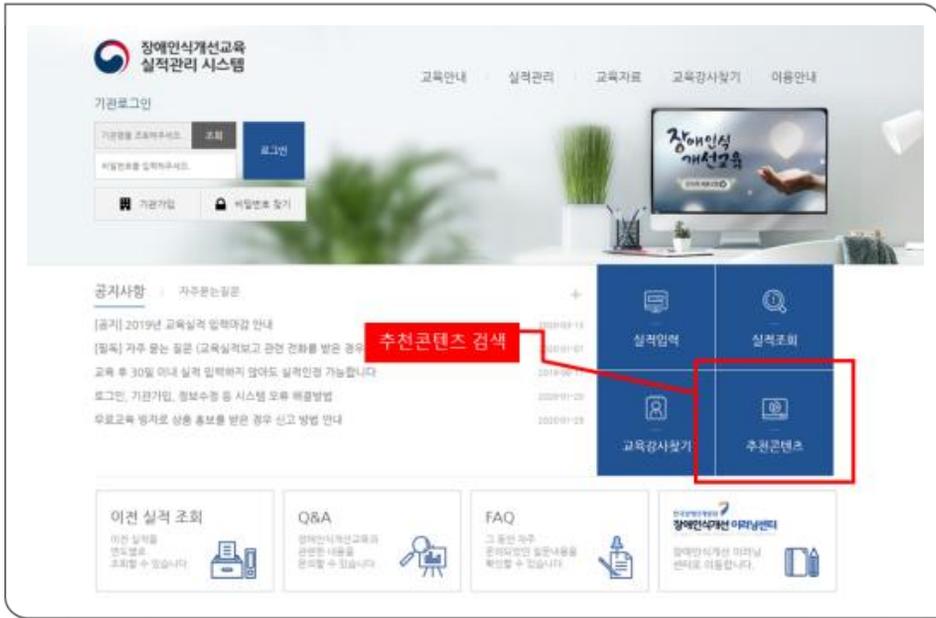
☞ (주의) 일부 교육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해 무료교육 제공 등 교육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가급적 이 안내서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①-3. 내부직원 전달교육

- 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한 교육* 가능. 장애 감수성을 가진 직원에 의해 실시(권고)
- * 단, 단순 문서(리플렛, 교육자료 등)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내용)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 가능
- (교육자료) 상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어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시 활용 가능
- '대상별(성인 등)', '자료유형별(영상, 도서, 이미지, 교안&교재 등)'로 나누어 추천 콘텐츠** 검색 가능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추천콘텐츠

** 추천 콘텐츠 관련 내용은 VII-3(추천콘텐츠 제도 안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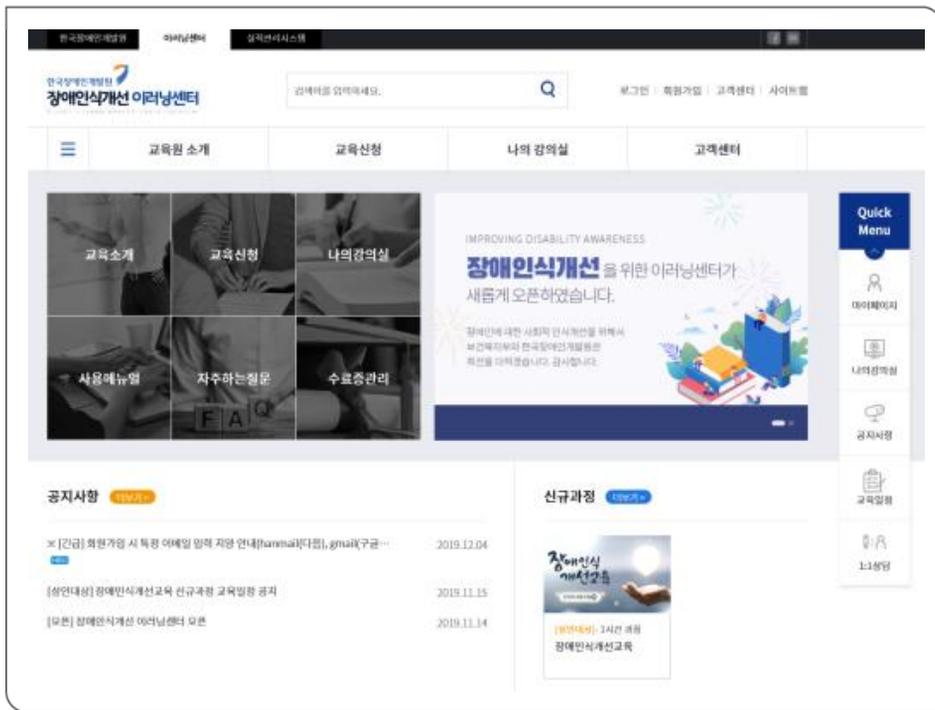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추천 콘텐츠' 현황>

② 원격 교육

- 비대면으로 인터넷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의 이러닝센터 교육, 시청각 교육 등이 있음
- 대면 교육이 어렵거나 집합 교육을 한 후 신규직원 등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할 때 원격 교육 실시 가능.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②-1.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교육(1시간) 수강 및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활용
 -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www.able-edu.or.kr/elearning
 - * 회원가입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 사용 권장
- 교육 수강 희망자는 교육 기간을 참고하여, 기수별로 수강신청 가능
 - * 총 19개 차시, 1시간으로 구성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수강신청 가능 (학습진도 90% 이상, 평가시험 70점 이상 수료)





교육과정안내		교육일정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 <input type="radio"/> 성인 <input type="radio"/> 학생 <input type="radio"/> 유아					
대상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상태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0기-	1시간	2020.05.25. ~ 2020.05.31.	2200명/2500명	수강신청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1기-	1시간	2020.06.01. ~ 2020.06.07.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2기-	1시간	2020.06.08. ~ 2020.06.14.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3기-	1시간	2020.06.15. ~ 2020.06.21.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4기-	1시간	2020.06.22. ~ 2020.06.28.	0명/200명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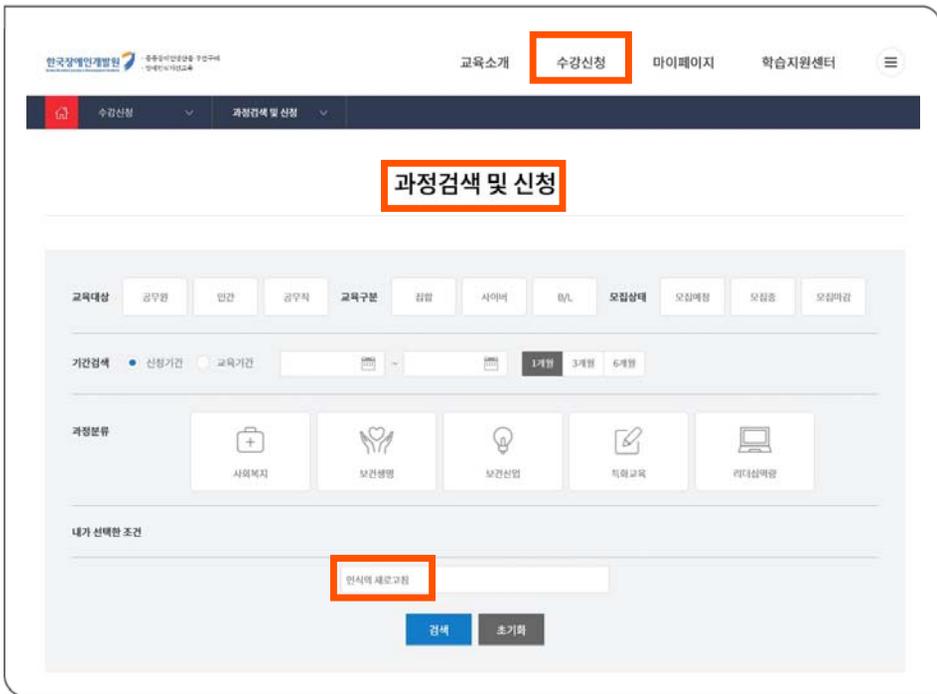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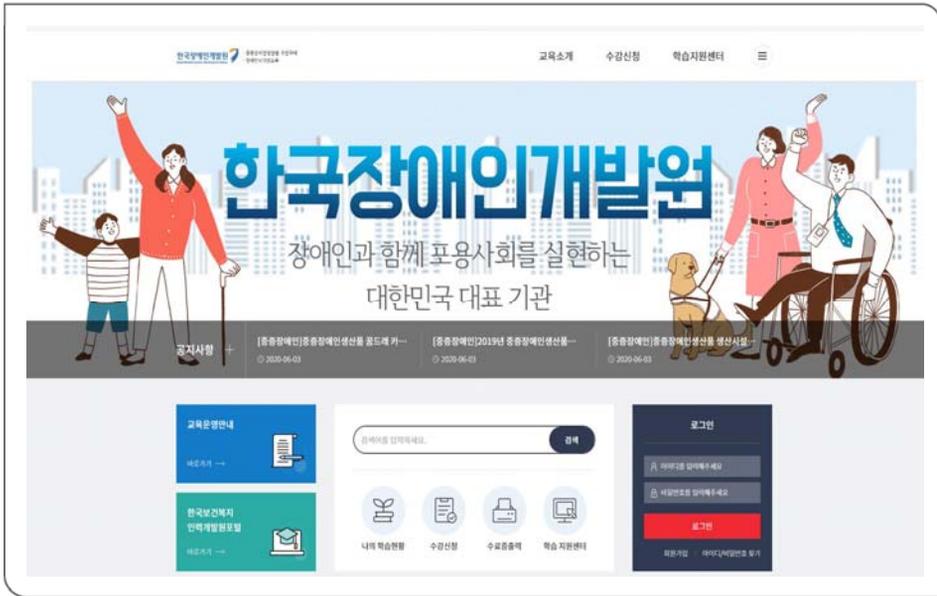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②-2. 사이버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부 사이버 교육센터 이용 가능
- *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는 VII-2(교육 운영 기관 현황) 참고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교육자료에서 확인 가능

교육기관명	교육 방법 및 내용	홈페이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공무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새로고침 -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새로고침 (2020.7.1.부터 수강가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로그인 >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HI 교육포털 공동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새로고침 	goods.kohi.or.kr/index.do > 로그인 >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인식의 새로고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식의 새로고침’>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을 수강할 경우, 필히 로그인→ 상단 메뉴 ‘수강신청’ 클릭 → 과정검색 및 신청 화면 내 ‘인식의 새로고침’ 으로 검색하여야 함

②-3. 시청각 교육

- 교육 동영상 시청 등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 시청 동영상 등에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 가능
- **(교육자료)** 상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어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
- ‘대상별(성인 등)’, ‘자료유형별(영상, 도서 등)’로 추천 콘텐츠** 검색 가능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추천 콘텐츠

** 추천 콘텐츠 관련 내용은 VII-3(추천콘텐츠 제도 안내) 참고

4 교육 결과 제출

- **(제출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기관 회원 가입 후 실적 입력
 - * 시스템 이용방법은 VI.(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후 가입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은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
- 실시 날짜, 교육 시간, 교육 대상 및 참가 인원,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사 성명 및 소속, 강의 또는 영상 제공기관명 등을 정확하게 입력*
 - * 교육 결과보고서는 VII(참고자료)-5-2(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참고
- **(제출 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상시제출 가능
 - 단, 사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사군구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대상이므로, 2020년 10월 31일까지 실적 입력

☞ **(주의)** 교육 결과 제출을 민간교육기관 또는 외부강사가 대행할 수 없음. 법상 교육의 주체는 기관의 장이므로 각 기관에서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함

5 교육 평가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감수성 및 장애이해 제고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권장)
 - * 교육 설문지는 VII(참고자료)-5-3(교육 만족도 조사지), 4(교육 효과 조사지) 참고



-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는 한편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환류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이라닝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안내 | 실적관리 | 교육자료 | 교육강사찾기 | 이용안내

기관로그인

기관명을 조회해주세요. 조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

기관가입 | 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 자주 묻는 질문

2019년 교육실적 입력마감 (미입력 기관 불이익 없습니다)

[필독]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실적보고 관련 전화를 받은 경우)
교육 후 30일 이내 실적 입력하지 않아도 실적인경 가능합니다
로그인, 기관가입, 정보수정 등 시스템 오류 해결방법
무료교육 병가로 상품 홍보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 안내

2020-03-13
2020-01-07
2019-06-11
2020-01-20
2020-01-25

실적입력 | 실적조회
교육강사찾기 | 추천콘텐츠

이전 실적 조회
이전 실적을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FAQ
그 동안 자주 문의하셨던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라닝센터
장애인식개선 이라닝센터로 이동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이라닝센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다름의 동행

실적관리 > 실적 입력

2020년 실적추가

당해 연도 실적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2020년도 실적추가 마감일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기관유형			
기관명			
주소			
담당자 성명	기관 번호		
	기관 이메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 실적제출화면>

V

교육실시 방법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 급 학교)



I 교육계획 수립

1 교육대상

가.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의 설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취지상 국가기관 전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교육보고율’ 지표 관리를 위해 **교육 후 실적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의 기준을 정함**

나. 교육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 기준

기관유형	의무대상 기준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자료 기준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실적관리시스템에 개별 가입 및 보고 * 분교 개별 보고 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각종학교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교(예시 : 캠퍼스) 현황 → 개별 보고 대상 * 대학원대학교 → 보고 대상

다. 교육 의무 대상 기준: 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

- (소속 직원) 기관장 및 모든 직원
- (학 생) 모든 학생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 이상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며, 만1~2세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참고사항

교육 취지에 따라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단, 2021년 실적부터는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 참석 여부’, ‘직원 교육 참석율’ 등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1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2021.6.4. 시행, 개정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교육 시행하기

1 교육 개요에 대한 이해

- (교육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권장*
 - * 유아(20분)/초등학생(40분)/중학생(45분)/고등학생(50분)/대학생 및 성인(60분) 기준
- (교육 인원) 교육 취지에 따라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 다만, '집합 교육(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1회 교육인원은 적정인원으로 나누어 실시 권고
-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 운영 가능.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 (교육 결과)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함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장애인복지법」 제25조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 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목표 수립하기

- (교육 목표) 성공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전년도 교육 결과 및 교육 수강생 의견 등을 반영하면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결정할 수 있음
 - * 교육 운영 계획서는 Ⅷ(참고자료)-5-1(교육 운영계획서) 참고

3 교육방법 결정하기

가. 교육방법 결정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기관별 특성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단, 단순 문서(리플렛, 교육자료 등)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의 방법>

대분류	소분류
① 집합 교육 (대면)	①-1.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①-2. 외부강사 교육
	①-3. 내부직원 전달교육
② 원격 교육 (비대면)	②-1.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②-2. 사이버 교육
	②-3. 시청각 교육

① 집합 교육

-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음
- 내부직원 활용,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 강사 자격의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 인식개선 분야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추천**
 - * 외부강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한 강사 및 주요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 확인을 통해 강사 섭외 권장
- 교육방법은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추어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문화체험, 장애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수 있음
 - * 장애체험 교육의 경우 '장애인은 힘들고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부강사를 이용한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를 요청하여 교육내용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포함 여부 및 교육 대상에 적합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확인 필요(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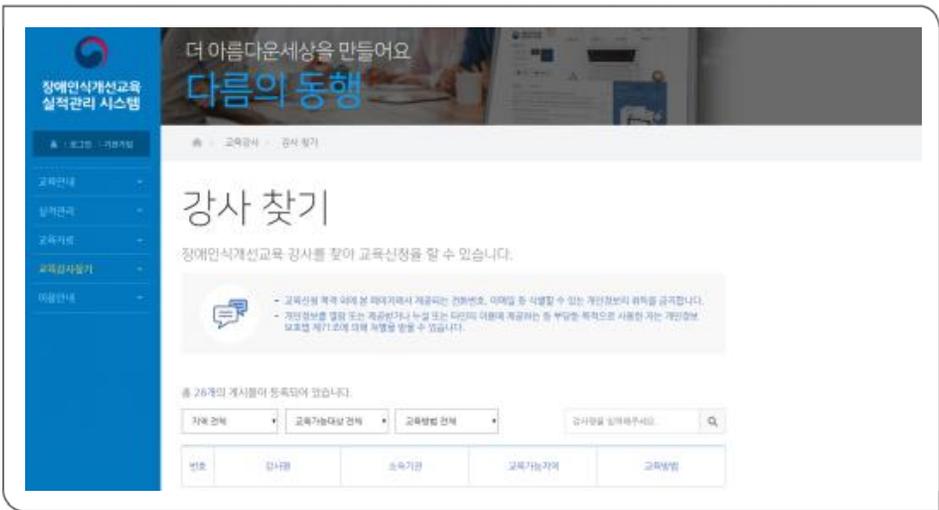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①-1.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한 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강사정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강사 찾기
- ‘지역’, ‘교육대상’, ‘교육방법’ 등에 따라 강사 검색 가능
- 강사 목록에서 ‘강사 명’ 클릭 시 강사정보 및 사진, 참고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섭외 희망 시 공개된 E-mail 또는 연락처로 직접 섭외 가능

● **교육신청 목적 외에**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 E-mail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을 금지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기조에 의해 **처벌 가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강사 찾기’ 메뉴>

①-2. 외부강사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한 강사 이외 모든 외부 초청강사에 의한 교육을 말함
-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은 없으나 정보 공유 차원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배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리스트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는 VII-2(교육 운영 기관 현황)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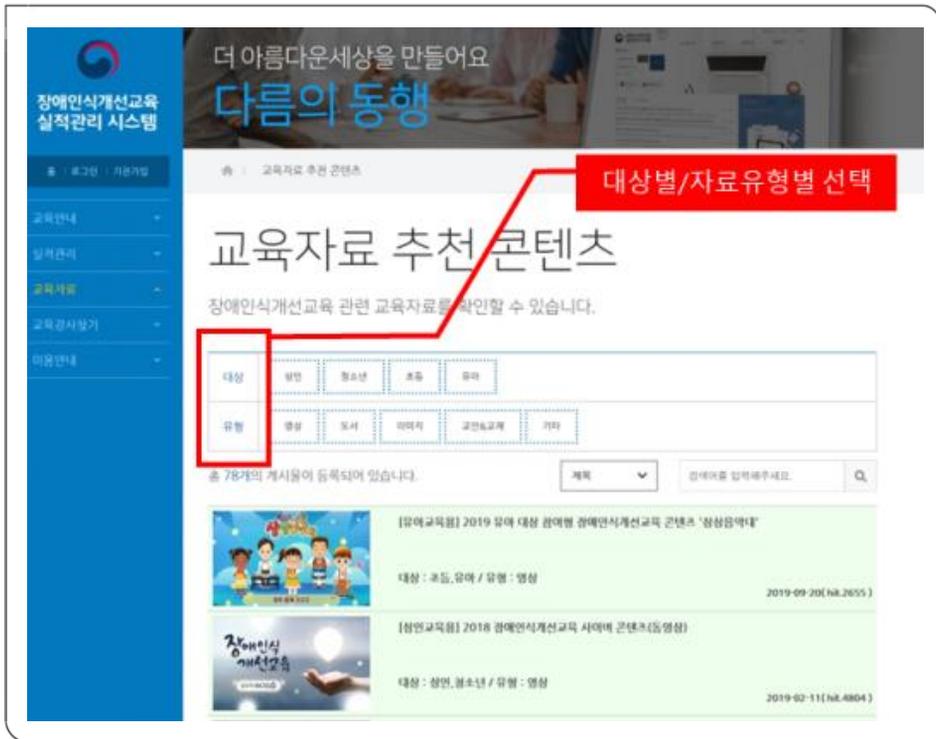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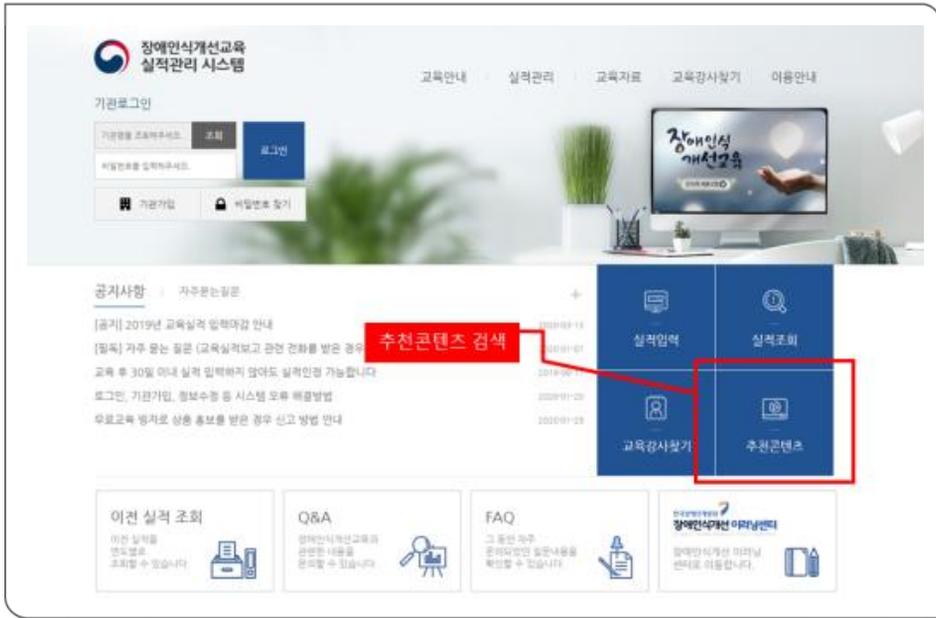
☞ (주의) 일부 교육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해 무료교육 제공 등 교육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가급적 이 안내서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①-3. 내부직원 전달교육

- 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한 교육* 가능. 장애 감수성을 가진 직원에 의해 실시(권고)
 - * 단, 단순 문서(리플렛, 교육자료 등) 배포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내용)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 가능
- (교육자료) 상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어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 시 활용 가능
- '대상별(유아, 청소년, 초등, 성인 등)', '자료유형별(영상, 도서, 이미지 등)'로 추천 콘텐츠** 검색 가능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추천콘텐츠

** 추천 콘텐츠 관련 내용은 VII-3(추천콘텐츠 제도 안내) 참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추천 콘텐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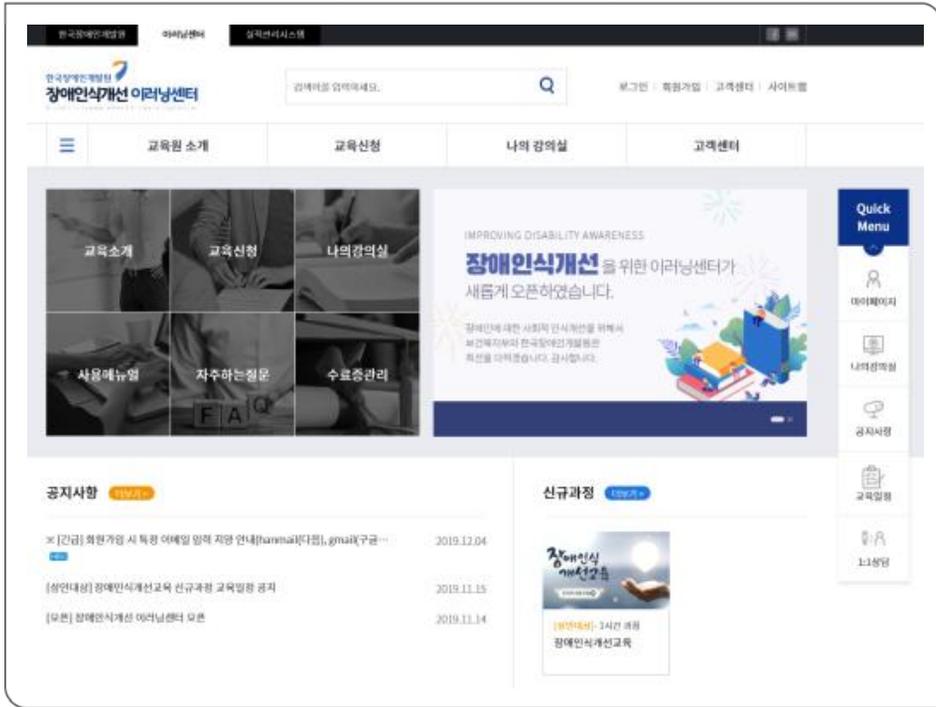


② 원격교육

- 비대면으로 인터넷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의 이러닝센터 교육, 시청각 교육 등이 있음
- 대면 교육이 어렵거나 집합 교육을 한 후 신규직원 등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할 때 원격 교육 실시 가능.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 적극 권장

②-1. 보건복지부 이러닝센터 교육(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교육(1시간) 수강 및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 이러닝센터’* 활용
 -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www.able-edu.or.kr/elearning
- 교육 수강 희망자는 교육 기간을 참고하여, 기수별로 수강신청* 가능
 - * 총 19개 차시, 1시간으로 구성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수강신청 가능 (학습진도 90% 이상, 평가시험 70점 이상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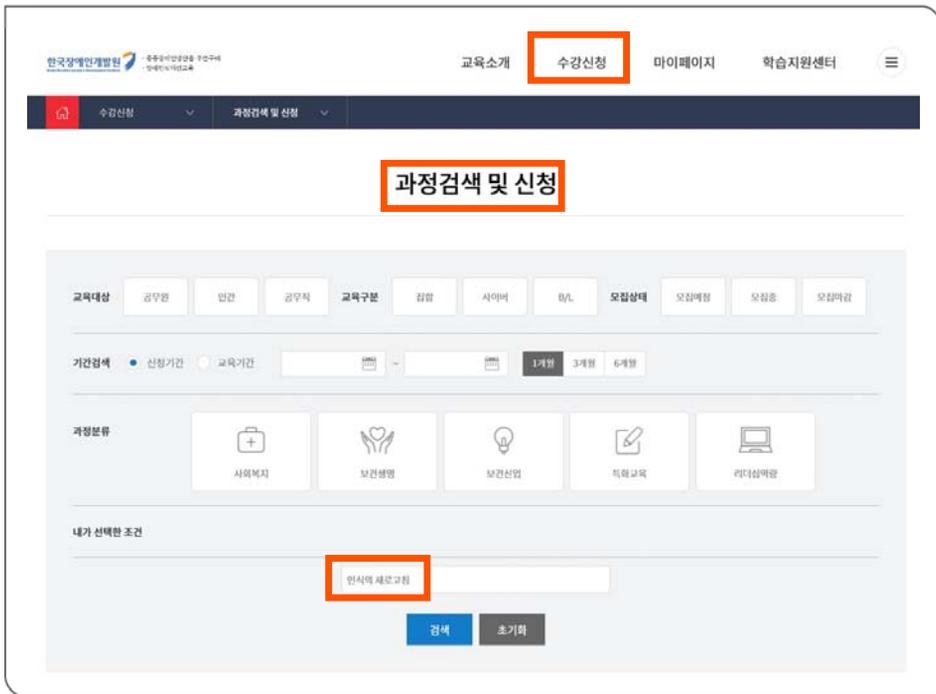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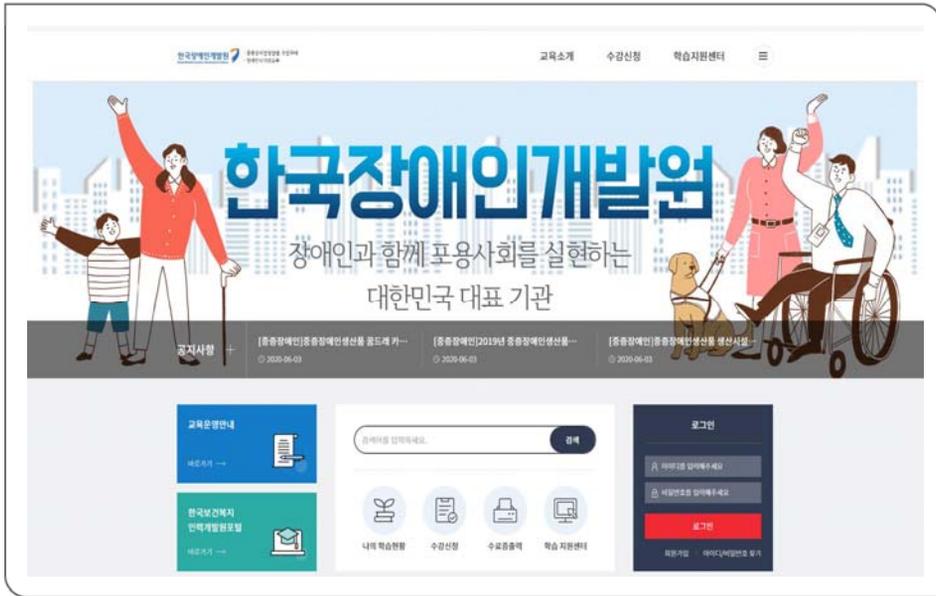
대상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상태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0기-	1시간	2020.05.25. ~ 2020.05.31.	2200명/2500명	수강신청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1기-	1시간	2020.06.01. ~ 2020.06.07.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2기-	1시간	2020.06.08. ~ 2020.06.14.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3기-	1시간	2020.06.15. ~ 2020.06.21.	0명/200명	대기
성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4기-	1시간	2020.06.22. ~ 2020.06.28.	0명/200명	대기

<장애인식개선 이터닝센터>

②-2. 사이버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부 사이버 교육센터 이용 가능
- * 교육 운영 기관 리스트는 VII-2(교육 운영 기관 현황) 참고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교육자료에서 확인 가능

교육기관명	교육 방법 및 내용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HI 교육포털 공동활용 - 인식의 새로고침 	goods.kohi.or.kr/index.do > 로그인 >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식의 새로고침’>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 ‘인식의 새로고침’을 수강할 경우, 팔히 로그인→ 상단 메뉴 ‘수강신청’ 클릭 → 과정검색 및 신청 화면 내 ‘인식의 새로고침’ 으로 검색하여야 함

②-3. 시청각 교육

- 교육 동영상 시청 등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 시청 동영상 등에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 가능
- **(교육자료)** 상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어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
- ‘대상별(유아, 청소년, 초등, 성인 등)’, ‘자료유형별(영상, 도서, 이미지 등)’로 추천 콘텐츠** 검색 가능
-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추천 콘텐츠
- ** 추천 콘텐츠 관련 내용은 Ⅶ-3(추천콘텐츠 제도 안내) 참고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유아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영상) 활용 가능
- * 추천콘텐츠 제목: [유아교육용] 2019 유아 대상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상상음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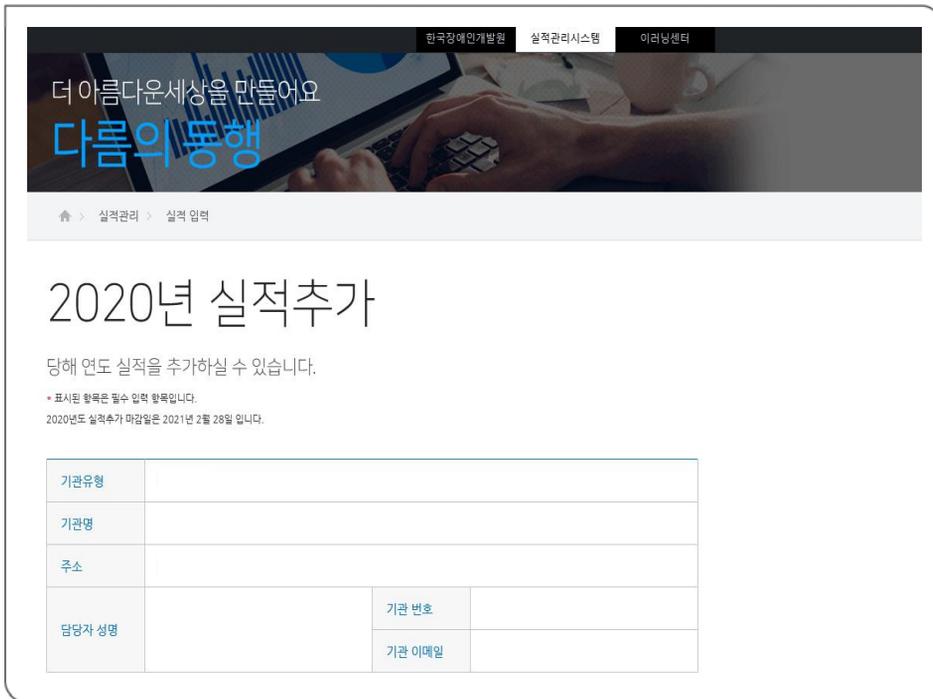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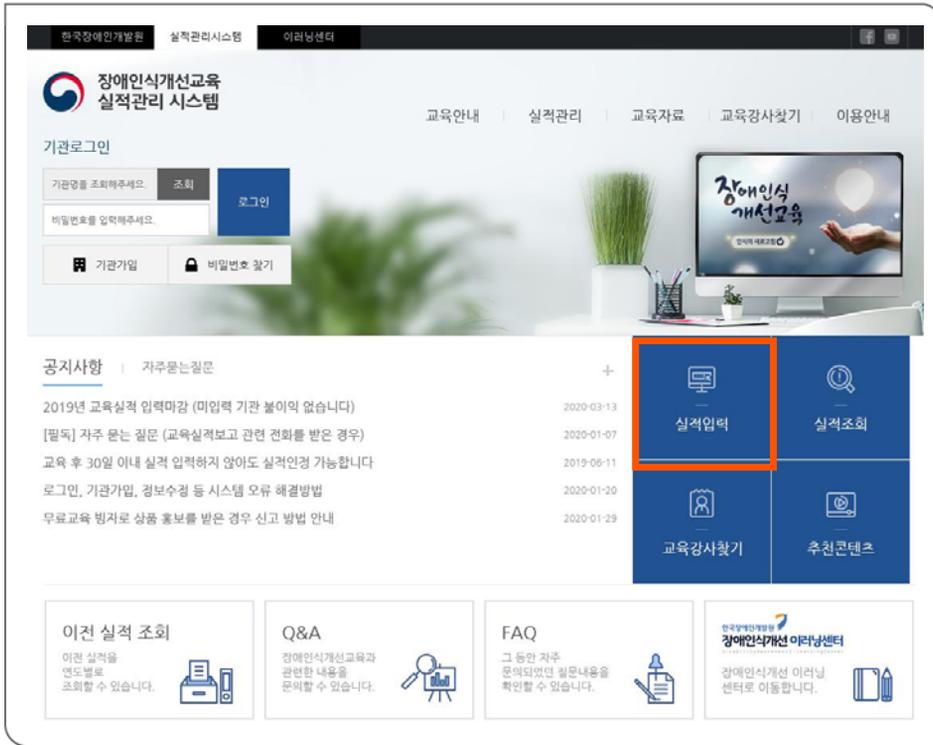
4 교육 결과 제출

- (제출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기관 회원 가입 후 실적 입력
 - * 시스템 이용방법은 VI(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후 가입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은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
 - 실시 날짜, 교육 시간, 교육 대상 및 참가 인원,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사 성명 및 소속, 강의 또는 영상 제공기관명 등을 정확하게 입력*
 - * 교육 결과보고서는 VII(참고자료)-5-2(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참고
- (제출 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상시제출 가능

☞ (주의) 교육 결과 제출을 민간교육기관 또는 외부강사가 대행할 수 없음. 법 상 교육의 주체는 기관의 장이므로 각 기관에서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함

5 교육 평가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감수성 및 장애이해 제고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권장)
 - * 교육 설문지는 VII(참고자료)-5-3(교육 만족도 조사지), 4(교육 효과 조사지) 참고
-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는 한편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환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 실적제출화면>



VI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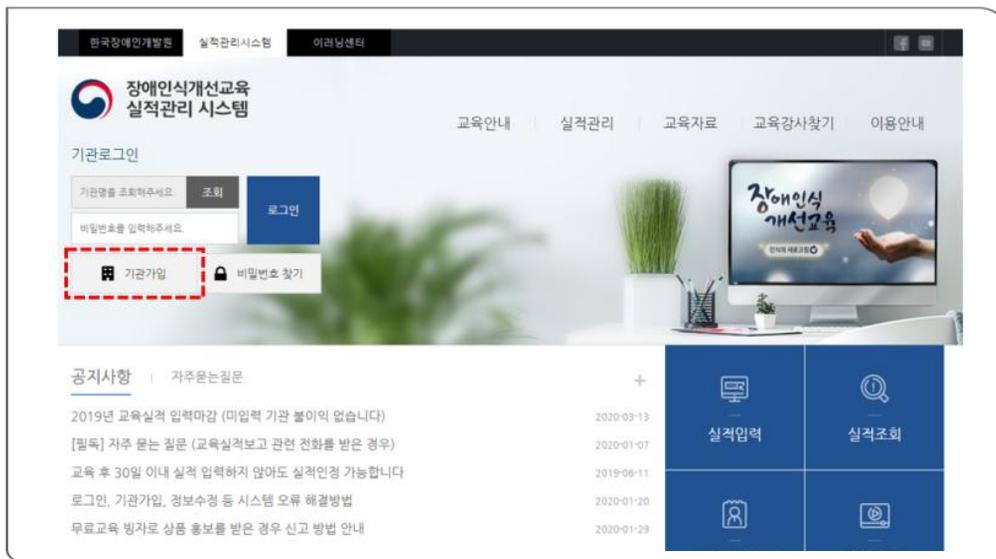
1 시스템 접속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www.able-edu.or.kr로 들어갈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구글, 네이버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검색을 통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2 기관가입

- 실적관리시스템 내 기관로그인 버튼 아래 ‘기관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관유형 선택, 사업자번호 중복조회

- ① 기관유형은 총 13개로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는 세부유형까지 선택합니다.
 - 국가기관 → 1차 / 2,3,4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기타
 - 공공기관 → 중앙(AILO 등록) / 산하(AILO 미등록)
 - 그 외 유형은 단일선택이며, 13개 유형에 속하지 않은 기관은 기타로 선택합니다.
- ②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중복조회를 실시합니다.

기관 가입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약관동의

약관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해 주세요.

2 정보입력

기관의 소중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가입완료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정보 입력

중복조회시 이미 가입승인된 기관의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실행하시기 바라며, 중복가입시 승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이메일과 연락처는 직접 수신가능한 정보로 입력바랍니다.

(*) 필수 입력

• 기관유형 **①** 국가기관 중양(1차)

•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②** [입력란] 중복조회

기관 중복 조회를 클릭하세요.

• 기관명 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4 사업자번호 중복조회

- 중복조회 후 이미 가입된 기관의 경우 '비밀번호 찾기' 또는 '고객센터(1522-0495)'로 문의합니다.
- 중복조회 후 가입된 기관이 없는 경우 하단의 '□신규가입하기' 선택 후 계속 진행합니다.

기관가입 중복조회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Chrome

able-edu.or.kr/join/popupAgencySearchN.do?rn=2198200333&cd=A01&subCd=A0101

기관 가입 중복 조회

검색 결과에서 가입할 기관명을 선택해 주세요.

기관 유형 : 국가기관 / 중앙(1차)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2198200333

계정상태	기관유형	상급기관	기관명	주소	기관 번호	사업자번호	선택
승인완료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 문 22 (여의도동) 이룸 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 발원	02-34*****98	*****0333	가입됨

기가입시 비밀번호 찾기 및 문의

미가입시 하단 신규가입 체크

1 2

[중복 조회된 기관이 없는 경우]

신규가입하기

※ 병설유치원, 본고, 상급-하급관계의 기관 외에는 중복 가입 시 승인이 제한됩니다.
이미 가입된 기관의 경우 비밀번호 찾기 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5 기관정보 입력 및 가입완료

- 기관명을 작성합니다.
 -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 명칭 추가(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기관명	<input type="text" value="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 기관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조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상세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기관 인증(이메일 또는 번호)을 진행합니다.
 - ※ 두 가지 인증 방법 중 1가지는 필수로 인증
 - 이메일 인증: 일부 메일은 전송이 늦거나, 스팸메일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번호 인증: 010-형식의 개인번호 및 내선(1,2,3번 등)을 선택하는 번호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기관 인증 (인증 선택)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기관 이메일 인증"/>		<input type="button" value="기관 번호 인증"/>	
	<input type="text" value="기관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input type="button" value="인증번호 발송"/>	[직접 수신이 가능한 이메일 입력]	
● 기관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인증번호"/>	<input type="text" value="확인"/>	(인증번호 발송전)	
	* 한번 전송된 인증번호는 10분간 유효합니다. * 일부 메일은 전송이 늦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한메일 서버는 메일시스템에서 거부 할수 있습니다.) * 수신 설정이 안되어있을 경우 스팸메일함으로 확인 바랍니다.			
● 기관 번호	<input type="text" value="지역번호 ▼"/>	<input type="text" value="0000"/>	<input type="text" value="0000"/>	[직접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입력]



- 소속상급기관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
- ※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 우측의 소속상급기관 없음 선택

소속상급기관
 소속상급기관 없음

소속상급기관을 선택해주세요.

시/도 ▼ 보건복지부 검색하기

기관명	주소	기관 번호	사업자번호	선택
보건복지부				[선택]

- 담당자 성명,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모든 정보입력이 완료 되면 가입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시스템은 관리자 승인 후 이용가능하며, 평일 4시 이전 가입의 경우, 최대 2시간 이내 승인됩니다.

담당자 성명

비밀번호

9자 이상 영문, 숫자, 특수기호(-,!,@,#,\$,%,&,*!,W,.,:;/,?)를 포함.

비밀번호 확인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 (문서파일 첨부가능 추가)
 * 업로드 가능 파일 용량은 396.2kb/ MAX 10mb 사용가능
+ 추가

C:\Users\Administr... 찾아보기...

↓

가입완료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이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 평일 4시 이전 가입된 경우, 최대 2시간 이내 가입 승인됩니다.

6 실적 입력 - 들어가기

-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의 '실적입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 ① '2020년 실적추가'를 누른 후 양식에 맞게 교육실적을 입력합니다.
- ② 실적이 정상적으로 입력(제출)된 경우 해당 칸에 한 줄씩 내용이 추가됩니다.





7 실적 입력 - 상세보기

- 한 회기에 실시된 교육대상별 '교육인원 수'를 입력합니다.
- *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실적결과에 영향 없음)

2020년 실적 추가

당해 연도 실적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2020년도 실적추가 마감일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기관유형			
기관명	장애인식개선캠프테스트2		
주소			
담당자 성명	기관 번호		
	기관 이메일		

교육인원 *	교육대상		실시인원(중복인원제외)
	성인	기관장	
직원			실시 인원 수 입력
대학생			실시 인원 수 입력
기타			실시 인원 수 입력
학생	고등학생		실시 인원 수 입력
	중학생		실시 인원 수 입력
	초등학생		실시 인원 수 입력
	유아		실시 인원 수 입력
	영아		실시 인원 수 입력
	총계		0명

기관유형에 따른 필수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초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고(대학원 포함), 각종학교
 ▶ 기관에 소속된 교사, 직원 및 학생
 * 위에 안내된 필수교육대상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최종적으로 교육실적이 인정됩니다.

- ‘교육방법(집합교육&원격교육,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자료출처’를 선택합니다.
- ‘교육강사(성명, 소속)’를 입력합니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콘텐츠를 제공한 기관명을 성명, 소속에 상동입력)

교육방법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 외부강사 교육 ● 내부직원 전달교육 원격교육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장애체험 ● 인형극 ● 강의 ● 토론 ● 문화체험 ● 기타(직접 입력)
자료출처	● 교육강사, 기관 자체자료 ●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 그외(직접 입력)	교육강사	강사성명을 입력하십시오. 강사소속을 입력하십시오.

교육방법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 외부강사 교육 ● 내부직원 전달교육 원격교육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input checked="" type="radio"/>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장애체험 ● 인형극 ● <input checked="" type="radio"/> 강의 ● 토론 ● 문화체험 ● 기타(직접 입력)
자료출처	● <input checked="" type="radio"/> 교육강사, 기관 자체자료 ●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 그외(직접 입력)	교육강사	홍길동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2020년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교육 실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날짜	2020-01-01 ~ 2020-01-01	교육시간	60	분
교육내용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적립입력)			



- ‘교육날짜(시작일자~종료일자)’를 선택합니다.
 - 다수의 인원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경우 첫 번째 직원의 시작일 부터 마지막 직원의 종료일을 선택
- ‘교육시간(00분)’을 입력합니다.
- ‘교육내용(총 6가지)’을 선택합니다. (중복선택 가능)

교육날짜 *	시작일자	종료일자	교육시간 *	분단위 입력	분
교육내용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개선 및 능력 향상 ☐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직접입력) <div style="margin-left: 20px;">} 중복선택 가능</div> </div>				

- ‘파일(교육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추가하기’를 눌러 실적입력을 마무리 합니다.
 -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교직원연수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내부보고문서 등을 첨부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한 무료 교육 실시 여부

예 / 아니요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한 무료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3항」으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

- * 교육증빙자료 : 교직원의 연수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내부보고문서 등
- * 업로드 가능 파일 용량 : 10b/ MAX 10mb 사용가능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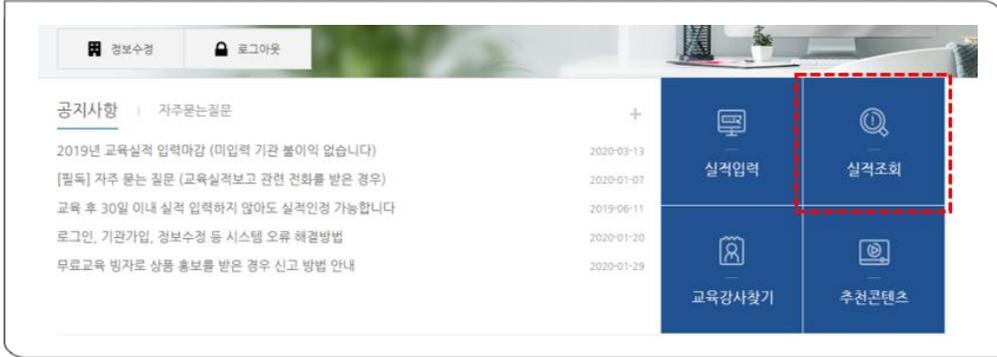
취소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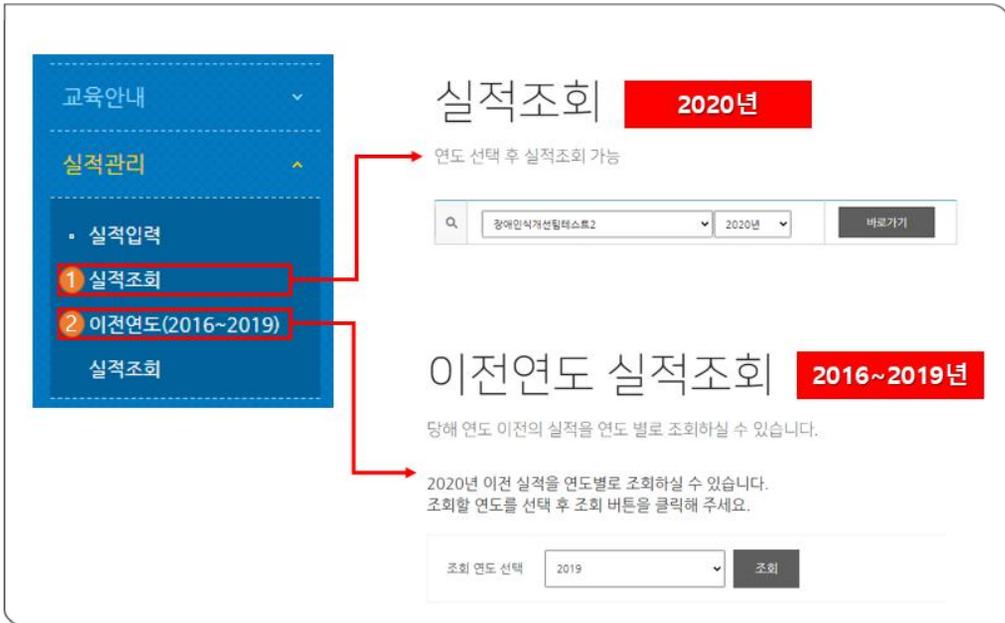
추가하기

8 실적 조회

-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의 '실적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 ① 당해연도(2020년) 실적조회를 원하는 기관명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 상급기관-하급기관 트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급기관의 실적도 조회 가능
- ② 이전연도(2016~2019) 실적조회를 원하는 연도를 선택 후 조회합니다.
 - 이전연도(2016~2019) 실적의 경우는 하급기관 실적조회 불가
(조회 희망 시 시스템 대표전화(1522-0495)로 문의)



VII

참고자료

1. 교육 유의사항
2. 교육 운영기관 현황(온·오프라인 리스트)
3. 추천 콘텐츠 제도 안내
4. 자주 묻는 질문
5. 각종 서식
 - 1) 교육운영계획서
 - 2) 교육결과보고서
 - 3) 교육 만족도 조사지
 - 4)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1 교육 유의사항

1 교육 미 실시에 대한 벌칙

- 2020년 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미 실시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상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으나, 향후 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관련하여 세부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공문 등으로 안내 예정
 - *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조치, 점검 결과를 언론 공표, 각종 평가에 반영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개정, 2021. 6. 4. 시행))

2 교육 관련 허위 홍보·안내 전화 대응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시스템’ 관리자만이 실적 제출 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 * 실적이 미제출 되었더라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별 기관에 별도로 교육 독려 등의 연락을 하지 않음
- 민간교육 업체에서 특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을 알리고 업체의 무료 교육 이수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 (예) “교육실적이 등록되지 않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지만 지정된 기관에게 받지 않아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등의 허위 내용 고지(구체적인 사례는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 ‘무료 교육을 빙자한 보험상품 판매’ 등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의 실적을 먼저 확인 후 대응하고 어린이집의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해당기관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교육업체의 방문을 허락하기 보다는 본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실시

☞ 위와 같은 홍보 전화로 교육을 받고 상품의 홍보를 받으신 경우 해당 업체명과 발신전화번호, 허위 홍보·안내 내용 등을 확인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대표번호(1522-049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운영기관 현황(온·오프라인 리스트)

● 공공 및 민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기관 세부내용(2020년 기준 업데이트 반영)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비용	홈페이지
국가 및 공공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 개발원	전체	• 보건복지부 양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정보제공	유료 *강사 개별 섭외	www.able-edu.or.kr >교육강사찾기
			• 강의형 집합교육(영상)	무료	www.able-edu.or.kr/elearning >교육신청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유아~ 성인	• 찾아가는 장애발생예방교육	유료	http://www.nrc.go.kr/education/main.do >교육지원
		중.고 성인	• 장애체험교육(강의, 체험)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체험 등 -기관 방문 또는 찾아가는 교육 등	무료	>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센터	초.중.고 성인	• 강의형 집합교육 -방문프로그램, 인권특강 등	무료	edu.humanrights.go.kr >인권배움터 >집합교육, 특강 교육
	국립특수 교육원 에듀에이블	유아~ 성인	• 교육활용 자료제공 -장애공감영상, 장애인권교육 웹툰 등	무료	nise.go.kr/main.do?s=eduable >장애공감 >인권교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성인 (사업주)	• 교육활용 자료제공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PPT 교재 동영상 등	무료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민간 기관	지역별 장애인 복지관	유아~ 성인	• 강의형 집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체험교육	별도 문의	hinet.or.kr >회원기관 >복지관현황에서 가까운 복지관 확인
	한국척수 장애인협회 한국장애 인식개선 교육센터	유아~ 성인	• 강의형 집합교육 • 장애체험교육 -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 • 장애인 스포츠	유료	aulim.org >교육안내 >교육신청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비용	홈페이지
민 간 기 관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	유아~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집합교육 인형극 골든벨(문제풀이대회) 장애체험활동 	무료	gsrpd.org >사업안내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하트하트 재단 발달장애 인식개선 교육센터	유아~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파견 -연주공연+스토리텔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유료	happyschool.art-heart.org >장애인식개선교육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초등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디&키디 -찾아가는 인형극, 교육연극 	유료	paradise.or.kr >사업소개 >버디&키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제공 -장애인식개선 영상동화 (버디&키디), 학습활동지 	무료	paradise.or.kr >커뮤니티 >자료실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초.중.고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집합교육 	유료	har.kappd.or.kr >인식개선프로그램
	장애인먼저 실천운동 본부	유아~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용 자료제공 -장애인식개선 관련 영상 웹툰 등 	무료	wefirst.or.kr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한국장애인 부모회	유아~ 성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집합교육 인형극을 활용한 교육 	유료	www.kpat.or.kr >부모회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지회,지부현황]	

※ 위 리스트는 정보공유의 차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정보공개 > 교육자료 게시판 내에서도 확인 가능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원격 교육 운영기관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비용	홈페이지
국가 및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 개발원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인식의 새로고침 	무료	www.able-edu.or.kr/elearning >교육신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성인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사이버연수원 - 장애의 이해 	무료	cyedu.kead.or.kr >연수안내/신청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신청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공무원에 한함)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배움터 - 인식의 새로고침 -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u>나라배움터</u> - 인식의 새로고침 (<u>2020.7.1.</u>부터 수강가능) 	무료	e-learning.nhi.go.kr >로그인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HI 교육포털 공동활용 - 인식의 새로고침 	무료	goods.kohi.or.kr/index.do >로그인 >수강신청 >과정검색및신청 >교육명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edu.kohi.or.kr/index.do >로그인 >KOHES사이버교육 의무교육 >수강신청 >과정검색및신청 >교육명 “인식의 새로고침” 검색

※ 위 리스트는 정보공유의 차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정보공개 > 교육자료 게시판 내에서도 확인 가능



3 추천 콘텐츠 제도 안내

1 제도 운영 목적

-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에서 개발한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를 조사·발굴하고 교육대상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 평가 심사단 운영을 통해 추천 콘텐츠를 선정·관리함으로써 대중의 교육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16.6.30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및 DB화, 추천 콘텐츠 발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특히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대상기관의 범위가 유아~성인까지 광범위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눈높이별 교육자료 필요성 대두
- 기존 공공·민간·해외에서 개발된 콘텐츠 분석 및 DB화를 통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맞춤형 관리 및 양질의 콘텐츠 유지를 위해 '추천콘텐츠 심사단'을 운영하고 '추천 콘텐츠'를 선정 및 홍보하여 장애 인식개선교육 자료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추천콘텐츠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발굴) 개발된 콘텐츠 자료 수집 및 분석 → (심사) 전문 심사단 구성·운영, 추천 콘텐츠 등재 여부 심사 → (보급) 등재 및 홍보
 - 목표(장애 인식개선 목표 부합), 대상(교육대상자 특성 고려), 창의성(구성의 독창성), 가독성(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 활용도(교육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 콘텐츠 선정

4 추천 콘텐츠 현황

- 2020. 5. 29. 현재 113종 콘텐츠 등록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서 열람 가능

교육자료 추천 콘텐츠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성인	청소년	초등	유아	공공기관 및 교직원
유형	영상	도서	이미지	교안&교재	기타

총 113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용] 2019 유아 대상 참여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대상 : 초등,유아 / 유형 : 영상

2019-09-20(hit.3734)



[성인교육용] 2018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 콘텐츠(동영상)

대상 : 성인,청소년 / 유형 : 영상

2019-02-11(hit.6627)

연도	대상	유형	교육자료명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유아	영상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상상음악대'

[2019]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관 현황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운영기관 현황자료입니다

대상 : 성인, 청소년, 초등, 유아 / 유형 : 기타

2019-07-29(hit.1713)

총 113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유아대상]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 강의안 수상작(우수상 2)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우수상을 받은 수업안입니다.

대상 : 유아 / 유형 : 교안&교재

2018-01-10(hit.10)



2] [유아대상]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 강의안 수상작(우수상 1)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우수상을 받은 수업안입니다

대상 : 유아 / 유형 : 교안&교재

2018-01-10(hit.11)



1] [유아대상]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 강의안 수상작(최우수상)

2017년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최우수상 수업안입니다

대상 : 유아 / 유형 : 교안&교재

2018-01-10(hit.1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추천 콘텐츠' 현황>



4 자주 묻는 질문(2020년 기준)

☞ 2020년 기준으로 설명된 내용으로 2021년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통 질문

Q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30일 이내 실적을 입력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해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실적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 교육실적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하며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이 30일 이내 보고되지 않았다”며 재교육을 강요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사기성 홍보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Q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설) 2020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벌칙이 없으나, 향후 교육 실시 결과 점검에 따라 교육 부진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이 실시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1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에 근거함

Q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해설) 2020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직원에 의한 교육, 사이버교육,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Q 교육실적을 교육기관에서 대신 입력해준다고 하는데요?

A

안됩니다.

(해설) 교육실적은 각각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기관에서 대신 입력해주겠다고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유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원격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각각 교육실적을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설) 교육실적은 기관 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 교육 이외에 개인별로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교육 담당자는 기관 전체 교육실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전화를 걸어 와 “개인별 교육 실적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원격 교육)



어린이집, 각 급 학교 질문

Q 교육대상은 소속직원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해설)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 대학교(대학원)의 경우 교육대상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단,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이상 교육을 시행하며 만1~2세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Q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했는데 실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A

가능합니다.

(해설) 학교에서는 적정 규모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 후 이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단, 소속직원과 학생의 실적은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Q

공공기관의 중앙 조직 교육담당자입니다. 지부(지사)에서 실적을 따로 입력할 수 있나요?

A

희망 시 가능합니다.

(해설) 교육실적은 기본적으로 중앙 조직에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앙 조직의 교육담당자는 교육실적 제출 시 지역조직(지부, 지사 등)의 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중앙 조직에서 취합이 힘든 경우 개별 지역 조직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가입하여 실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라며 산하 조직의 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 내용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의 지방 조직 교육담당자입니다. 실적을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

희망 시 가능합니다.

(해설) 교육실적은 기본적으로 중앙 조직에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그러나 지방 조직에서 교육 실시 후 개별적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조직과 협의하여 지역 조직 단위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가입하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Q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담당자입니다. 시군구에서 개최한 교육을 참가하였는데 따로 교육실적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해설) 교육실적은 기관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읍·면·동 모두 각각 교육실적 제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 읍·면·동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괄 통합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읍·면·동 단위에서는 별도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서 회원 가입 후에 교육실적을 제출해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출장소, 출자출연기관, 보건소도 교육실적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설) 출장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보건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실적결과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각종 서식

1 교육 운영 계획서

교육 운영 계획서			
기관명:		작성일자:	
		작성자:	
교육명			
교육일시		장 소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형식	<input type="checkbox"/> 집합 <input type="checkbox"/> 원격(온라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방법	<input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공연(인형극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강사	이름		
	소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	
	기타	*주요이력 또는 장애여부 기입	
교육내용			
소요예산			
준비사항	*강사 요청 편의 제공, 건물 내외부 접근성 확인 등		
강의평가	<input type="checkbox"/> 만족도 조사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인터뷰)		
첨부자료	강의 계획서(강사 제공)		
비 고			



2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일자 : 2020. 0. 0.]				
기관유형	공공기관	중앙	상급기관	보건복지부
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0			
담당자	나담당	연락처	02-3433-0000	
		이메일	koddi@koddi.or.kr	
교육인원 *영아는 결과반영 X	교육대상			인원
	성인	기관장	실시인원 수 입력	
		직원	"	
		학생	"	
		기타	"	
	청소년	고등학생	"	
		중학생	"	
	어린이	초등학생	"	
		유아	"	
		영아	"	
	총 계	00 명		
교육방법 *교육방식 주요프로그램 각각 선택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양성강사 교육 ○ 외부강사 교육 ○ 내부직원 전달교육 <원격교육> ○ 장애인식개선 이터닝센터 ○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장애체험 ○ 인형극 ● 강의 ○ 토론 ○ 문화체험 ○ 기타 (직접입력)	
자료출처	● 교육강사, 기관 자체자료 ○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 그 외 (직접입력)	교육강사	이름 : 홍길동 소속 :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날짜	2020년 0월 0일 (월) ~ 2020년 0월 0일 (화)	교육시간	60 분	
교육내용 *중복 선택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직접입력)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한 무료 교육 실시 여부 ○ 예 / ● 아니요 ※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된 무료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3항」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계획안,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참석자 명부 등			

3 교육 만족도 조사지

교육 만족도 조사지

강사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3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4	교육방법이 흥미를 유발하고, 사례나 예시 등이 적절히 사용되어 집중도를 높였다.					
5	교육생의 이해도 및 소속 기관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였다					
6	교육 진행시 시간 배분(전달내용의 조직화, 설명, 토론)은 적절하였다.					
7	교육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은 적절하였다.					
8	강의 방식(속도, 언어 구사, 음량, 제스처)은 적절하였다.					

강의 주제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2	나에겐 새로운 개념과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3	나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4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 운영(일정, 교육 준비 등)이 잘 준비되었다.					
2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교육생 인원은 교육 효과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규모였다.					

기타
본 교육과정 운영 사항 관련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또는 차년도 과정을 위한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4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교육 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3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4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					
6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					
7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을 알고 있다.					
9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있다.					
10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교육 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의 개념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3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4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5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6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7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8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9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다.					
10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